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 행정과	1

(2014. 7. 9)

마포구의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6월 27일(금), 마포구청장

3. 위원회 회부일자

- 2014년 7월 8일(화)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5. 검토보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2개의 행정동(아현, 염리동)과 3개의 법정동(공덕, 아현, 염리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준공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란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능률도 저해할 수 있는 바, 이를 하나의 법정동으로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구역을 변경·개정하려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에 개정연혁표 9를 신설하여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마포구 염리동 14의 404번지 외 93필지 9,347.4㎡를

아현동으로 편입(행정동, 법정동 변경)하고, 공덕동 122의 19번지 1.0㎡를 아현동으로 편입(법정동 변경)하여 아파트 단지 내 법정동을 아현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

7.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재익)으로부터 2014.4.28일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고,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2014. 9. 30일 까지 준공 완료 예정임에 따라, 현재 행정동이 영리동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 영리동 14의 404번지 외 93필지 9,347.4㎡와 행정동은 아현동이나 법정동이 공덕동으로 되어 있는 마포구 공덕동 122의 19번지 1.0㎡를 모두 아현동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편익 도모는 물론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소재지는 마포구 아현동 635번지 일대 면적 207,420.8㎡, 아파트는 51개동 3,885세대(분양 3,224세대, 임대 661세대)가 되겠으며, 동일한 정비사업구역 내에 혼재되어 있는 2개의 행정동(아현, 영리동)과 3개의 법정동(공덕, 아현, 영리동)을 하나의 법정·행정동인 아현동으로 통일하고자 제출된 것임.
- 또한,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민들이 법정동 분리에 따른 각종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당부서(주택과)의 의견과 공덕동 1필지 1.0㎡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조성되고 영리동 94필지 9,347.4㎡는 단지 내 공원으로 조성되며, 거주자도 없고 주로 아현뉴타운 입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구역 관리상 아현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있었음.

○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 6.12~ 6.22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은 없었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동일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아현3지구 정비구역 내 염리동과 공덕동을 아현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부서에서 유의할 사항으로는 아현3지구 정비구역 내 아파트가 준공 이후 법정동과 행정동의 혼용 표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공 이전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관련공부를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 추진 일정별 사전점검 및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8. 참고사항

○ 개정연혁표 9

개정연혁표 9

염리동 14의404번지, 염리동 14의405번지, 염리동 24의1번지부터 염리동 24의65번지까지, 염리동 24의88번지부터 염리동 24의91번지까지, 염리동 24의95번지, 염리동 24의96번지, 염리동 24의111번지부터 염리동 24의115번지까지, 염리동 24의122번지부터 염리동 24의127번지까지, 염리동 24의133번지부터 염리동 24의135번지까지, 염리동 24의138번지, 염리동 24의168번지, 염리동 24의169번지, 염리동 24의177번지, 염리동 24의178번지, 염리동 24의180번지, 염리동 27의211번지, 공덕동 122의19번지를 아현동에 편입한다.

아현제3구역 행정구역 변경도



염리동 94필지 9,347.4m²
(법정동, 행정동 변경)

공덕동 1필지 1.0m²
(법정동 변경)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4.1.21.] [법률 제12280호, 2014.1.21., 일부개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